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4.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주)솔로몬엠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 히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사고”란 회사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 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 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 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 이행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제 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회사의 전 임직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주)솔로몬엠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0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3.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4.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6.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 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 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 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 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회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 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 ③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 구성)

- ①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6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2명(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2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 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직원

-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사용자 위원장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제12조(운영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⑦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사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대상 및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실시하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실시 방법)

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과 회사 자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제18조(교육관계서류 보존)

- ① 관리감독자는 보건교육 결과서류(교육일지, 서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교육관계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관리

제19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① 회사는 임직원과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 1.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제21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 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 는 건강장애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 령에 따른다.

제22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 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과 직무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3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 가 즉시 작업 을 중지 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 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의 작업중지)

- ①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 장 등 직위자는 안전·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

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안전보건 점검)

- ① 관리감독자 또는 주관부서는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관리하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 또는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제27조(안전검사)

- ① 회사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 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 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안전보건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 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표지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내용 및 위험사항 등을 인지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회사는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 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 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 어 두어야 한다.

⑤ 회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 물(이하 “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 “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작

성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 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제5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1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업 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 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재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포함)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 및 회사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대상자는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 근무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2(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 트 레스” 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 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 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 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① 회사는 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 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회사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 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 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 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그 밖 에 걱정 범위를 벗어난 신 체적·정신 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 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 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업 무의 일시적 중단(업무중

지권), 재량권 부여 및 고충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회사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회사는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와 관련하여 휴가, 병가, 휴직 시 직장 복귀가 원활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험성평가

제3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 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④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제38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 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정기 위험성평가 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 공일을 말한

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38조의2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분기별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제41조(위험성평가 절차)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41조의2(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소관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 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 회시켜야 한다.
- 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 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3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 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4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회사는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주관부서장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 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개선 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소관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회사는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45조(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주관부서 또는 소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회사는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재해 발생보고)

- ① 소관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자율안전활동

제47조(자율안전활동)

- ① 회사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도록 자율안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재해운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제안제도 등)

회사는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련 개선과제 제안을 위한 안전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 순찰)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수시로 사업장을 안전순찰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

제8장 상벌 및 기타

제50조(포상)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 다.

제51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52조(변경절차)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 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 하여 안 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고 직원에게 알려 야 한다.

제53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24. 10.01S)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